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2024. 3. 12. 여수시장인

여수시 조례 제2044호

붙임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부

여주시 조례 제2044호

여주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주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 등) 시설 설치
5. 경로당 안전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보수, 증축) 및 물품·장비보강 사업비. 단, 타 법령에 따르거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목적 사업에 대해 해당연도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제외 한다.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제4조 제3항 중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를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필요한 지원을 할”을 “지원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양곡구입비

4.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한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u><신 설></u>	1. ~ 3. (현행과 같음) 4.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시설 등) 시설 설치 5. 경로당 안전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보수, 증축) 및 물품·장비보강 사업비. 단, 타 법령에 따르거나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목적 사업에 대해 해당 연도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임차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제외한다.
<u><신 설></u>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u><신 설></u>	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 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4.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 설></u>	8.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 지원할 -----.
<u><신 설></u>	1. 경로당 운영비
<u><신 설></u>	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
<u><신 설></u>	3. 경로당 양곡구입비
<u><신 설></u>	4.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